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육 및 연구 협력 협약서

세종대학교 (주관: 기후변화센터) (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學研 협력체 제 구축과, 교육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과 범위) 대학과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로 한다.

1. 기관은 정부(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관련하여, 대학이 추진하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기로 한다.
2. 기관은 대학이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3. 대학과 기관은 워크숍 및 세미나를 포함한 교육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대학이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 대상 대학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제1항의 협약기간 내이라도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업무주관)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업무의 운영 및 추진은 대학에서 주관하기로 하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기관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분담)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관련하여 수행 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대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관의 비용분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학연협력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 중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쌍방이 사전 협의하여 공개한다.

제7조(협의조정 및 협약이행)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과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변경하기로 한다.

② 대학과 기관은 양 당사자의 내규에 따라 본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6월 13일

[대 학]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신재

[업무주관]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센터장 전의찬

[기 관]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안병현